

성남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93
----------	-----

제출년월일 : 1999년 5월 28 일

발 의 자 : 박천중 의원 외 9 인

1. 제안이유

성남시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조례중 착오로 잘못된 용어에 대하여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개정코자함.

2. 주요골자

- 보상금 지급기준중 “시도의원”을 “시의원”으로 함 (안 제4조)
- 보상금의 지급에 있어 “구좌”를 “계좌”로 개정(안 제8조제1항)
- 조항의 조명개정(안 제11조, 제14조, 제15조)
 - 제11조의 괄호내 “심의위원회의 임기”를 “심의위원의 임기”로 개정
 - 제14조의 괄호내 “심의회의 간사”를 “심의회 간사”로 개정
 - 제15조의 괄호내 “심의회의 수당등”을 “심의회 수당등”으로 개정

성남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1호,제2호중 “시도의원”을 “시의원”으로 한다.

제8조 제1항중 “구좌에”를 “계좌에”로 한다.

제11조 조명중 “심의위원회의 임기”를 “심의위원의 임기”로 한다.

제14조 조명중 “심의회의 간사”를 “심의회 간사”로 한다.

제15조 조명중 “심의회의 수당등”을 “심의회 수당등”으로 한다.

부 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보상금지급기준) ①(생략)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u>시도의원</u> 당해연도 회의수당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는 <u>시도의원</u> 당해연도 회의수당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3. (생략) ②(생략)	제4조(보상금지급기준) ①(현행과 같음) 1. ----- ----- <u>시의원</u> ----- ----- 2. ----- -- <u>시의원</u> ----- ----- 3. (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 한 <u>구좌에</u> 입금한다. ②(생략)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 ----- -- <u>계좌에</u> ----- ②(현행과 같음)
제11조(<u>상임위원회의 임기</u>) (생략)	제11조(<u>상임위원의 임기</u>) (현행과 같음)
제14조(<u>심의회</u> 의 간사) ①(생략) ②(생략)	제14조(<u>심의회 간사</u>)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제15조(<u>심의회</u> 의 수당등) (생략)	제15조(<u>심의회 수당등</u>) (현행과 같음)